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사천행복요양원-

제 1 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요양원 입소 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9조제2항의 시설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1. 입소 정원은 시설 설치 허가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

:총원 61명(일반실 37명, 치매전담 가형 1실 16명, 치매전담가형 2실 8명),

2. 모집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각 지역 시(도), 군,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
- ② 자체 홈페이지 활용 및 지역 관공서 유관 홈페이지 연계
- ③ 지역신문에 게재
- ④ 연 1회 배부되는 소식지 및 홍보용 전단지 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

제 2 조(입소계약) 사천행복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서비스내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에 제시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에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 ① 대상자 : 노인들의 심신기능유지, 여가문화 및 건강생활 지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 인지기능유지 및 증진
- ② 서비스 : 입소어르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서비스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27조의2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 제1항에 의거 본 시설의 서비스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급여는 물가변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본 시설의 이용을 희망할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무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용료의 전액을 부담한다.
-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본 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③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④입소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⑤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
- ⑨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 ⑩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⑪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 ②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 ⑤입소자(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⑥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신변이상시 보호자(계약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거 의도적으로 수신 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한다.

- ① 서비스이용자(보호자)는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해야하며 월 이용료 납부를 계약서상 명시된 계좌로 시설은 당월 10일까지 납부 하여야한다. 그리고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보호자는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져야한다. 계약의 해지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④ 시설입소자는 11일 이상 장기 입원 하여 수가적용이 되지 않고 병원진료가 더 필요하여 시설복귀가 어렵고 입소대기자가 있을 때 (단, 수가가 적용되는 입원기간은 관련법규의 고시가 변경될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문제자로 타 입소자(이용자)의 생활 또는 시설물 파손 등 시설운영관리에 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기한 또는 연체 본인부담금 완납에 대한 약정 없이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 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3조 (입소 이용료 변경방법 및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입소어르신의 수급자격(일반→기초수급자 또는 경감대상자, 기초수급자 또는 경감대상자→일반)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비급여 - 사천시 사회복지법인협의회를 통한 인상 및 인하
6.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 및 소식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먼저 알린 후 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분은 보호자에게 드린다.

제 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대한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기능의 훈련 ● 기본동작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공기압 치료 등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보건·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감예방접종 및 년1회 건강검진 ● 건강상태 관찰 및 활력징후측정(혈압, 체온, 호흡, 체중 등) ● 투약관리 및 호흡기 간호 ● 피부간호 및 감염예방 ●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구강간호 ● 계약의사진료 지원 및 병원입원 지원 ● 건강교육 등 ● 응급상황대처(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및 의료기관 응급이송
인지관리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배회, 불결, 폭력행위 등 그 밖의 문제행동 대처 등) ● 정서적 안정된 환경조성 등
정서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지원
응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대처(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및 의료기관 응급이송
프로그램 지원	여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활동(옛노래감상, 악기연주하기, 노래부르기) ● 신체활동(전통놀이, 플로어컬, 종이컵쌓기 등) ● 미술활동, 요리활동 등
	인지기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북활동 등 ● 지필활동(미로찾기, 모양찾기, 한글공부 등) ● 창작활동(종이접기, 달력만들기, 칠교놀이 등) ● 회상활동(그리운옛노래, 활동신문만들기 등)
	신체기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뇌체조, 맨손체조, 수건체조, 건강체조 실버체율, 율동, 풍선배구, 풍선배드민턴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시장놀이, 세상뉴스전하기, 신문보기 어버이날 행사 등
	가족지지 및 가족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회의, 상담서비스 등
	특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돌아보기 등
생활 및 환경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 린넨 교환 및 정리 ● 물품관리 및 세탁물 관리

◎2026년 서비스 비용

2026년 서비스이용료(월)

1)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일반실	93,070	86,340	81,540	
치매전담실	-	96,950	89,400	

2)본인부담금(30일기준)_일반실

구분	일반(20%)			경감(12%)			경감(8%)		
	1등급	2등급	3~5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본인부담금	558,420	518,040	489,240	335,050	310,820	293,540	223,370	207,220	195,700
비급여 (식대+간식)	300,000			300,000			300,000		
합계	858,420	818,040	789,240	635,050	610,820	593,540	523,370	507,220	495,700

3)본인부담금(30일기준) -치매전담실

구분	일반(20%)		경감(12%)		경감(8%)	
	2등급	3~5등급	2등급	3~5등급	2등급	3~5등급
본인부담금	581,700	536,400	349,020	321,840	232,680	214,560
비급여 (식대+간식)	300,000		300,000		300,000	
합계	881,700	836,400	649,020	621,840	532,680	514,560

5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인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및 종사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때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특별서비스제공을 위해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나 상급침실 이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제 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응급상황 발생시 : 응급상황 발생확인한 자는 응급상황에 맞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비상연락망에 의거 연락을 취하고 필요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방문요양 담당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3. 협약서 체결한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4. 어르신의 상태변화에 따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시설에서 위임받아 병원진료를 받음.
5.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7조 (시설물사용상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은 시설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 책임자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점검사항을 각각 명시한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내·외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 시설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소인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3. 하절기에는 하절기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냉방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동절기에는 월동대책을 수립하고 난방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5. 차량은 지정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결과를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소방기구등은 충전상태, 정위치 등을 일일 확인하여야 한다.
7. 시설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상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시설장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기계

대하여는 안전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직원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매년 시설장의 지시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설장은 건강검진결과 직원의 건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원은 시설장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1. 시설장은 입소(이용)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아래와 같이 감염,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고, 평가, 기록 관리 하도록 한다.
 - 1) 생활 어르신의 불명확한 상처를 수시로 확인 한다.
 - 2) 예방 접종을 한다.
 - 3) 전염병을 관리 한다.
 - 4) 식중독을 관리 한다.
 - 5) 구충제를 연2회 봄, 가을로 복용한다.
 - 6) 시설어르신은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7) 감염성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월 1회 이상 업체 수거
 - 8) 처치 후 기구의 멸균 소독을 철저히 한다.
 - 9) 어르신 케어 전, 후 직원의 손 닦기를 생활화하여 병균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 10) 유치도뇨와 관련된 요로 감염 예방관리를 한다.
 - 11) 호흡기계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한다.(석션, 튜브)
 - 12)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신속히 격리하고 연계된 병원에 의뢰,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 13) 분기별 원내, 원외 소독을 실시한다.(살충, 살서, 살균제)
 - 14) 독감 발생 시 전염을 막기 위해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 15) 건강상태를 보호자와 주기적으로 의논한다.
 - 16) 감염의심 및 감염병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 17) 감염예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제8조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사회복지사는 이용, 입소 대상자의 사망 확인 시 먼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족이 부재인 독거 노인인 경우는 읍, 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최종적으로 업무가 위임되어 종결되는 시점까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차량지원 및 동행 중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사고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하며. 업무 중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민법 등의 관례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배상책임, 면책 등의 사유발생시 관련법령 및 사회관례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4.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때와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5. 시설 내에서 자연사망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입소자(이용자)_보호자임의의 외출 및 외박,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시설에 배상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